

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224
----------	------

2025. 1. 16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발의일·발의자: 2025. 1. 8.(수) 서영배(옥곡) 의원

나. 회부일: 2025. 1. 8.(수)

다. 상정일: 2025. 1. 16.(목)

-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-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, 24년 광양시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3건이며 피해액은 모두 합쳐 약 1억 5천 3백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됨.
- 우리 시에서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3조)
- 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,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~제6조)
- 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, 안 제8조)
- 피해지원금 등 수령 및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, 안 제10조)

3.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광양시 내 화재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,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97곳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-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상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, 조례안 시행 이후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매뉴얼 마련과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

5. 심사 결과: 수정의결(출석위원 6명)

6. 기타 사항

- 해당 없음.

붙임: 1.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224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1. 16.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(위원장)

1. 수정 이유

- 조례안 조문 중 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을 현실에 맞게 수정

2. 수정 내용

- 제7조제2항 중

“화재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(배우자 및
직계존비속에 한한다)”을

“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”으로 수정

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화재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(배우자
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)”을 “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”으로
수정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·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화재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)</u>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화재피해”란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)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.
2. “화재피해주민”이란 화재피해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전소”, “반소”, “부분소”란 「화재조사 및 보고규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.
4. “피해지원금”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금액을 말한다.
5. “폐기물처리지원금”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,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(이하 “피해지원금 등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전소: 300만 원
 - 나. 반소: 200만 원
 - 다. 부분소: 100만 원

2. 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.

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「화재조사 및 보고규정」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.

제5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) 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: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
2.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: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
3.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: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지원

② 폐기물처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는 주체로 한다.

제6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)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. 다만,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2. 피해주택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
3. 「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

제7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) 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

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·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~~화재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)~~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조(피해지원금 등 지원 결정)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·면·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피해지원금 등 수령) 피해지원금 등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비용 환수)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